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3248 지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롯데쇼핑 주식회사
피	고	1.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3.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4.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2. 22.
판 결 선 고		2016. 1.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14. 7. 10.에 한 별지1 기재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계 43,082,6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3. 5. 14.에 한 별지2 기재 사업소세(종업원할) 내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16,678,0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3.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 2013. 5. 10.에 한 별지3 기재 사업소세(종업원할) 내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38,120,0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4.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2013. 5. 20.에 한 별지4 기재 사업소세(종업원할) 내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합계 54,362,6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 중 두 개 이상의 사업을 동일 건물 내 서로 다른 층 혹은 다른 구역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네 개의 지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의 운영 형태는 다음과 같고, 원고는 지점별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이하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가 별개의 사업소라는 전제 하에 아래 면세점의 경우 종업원의 통상인원이 50명 이하인 면세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1]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점명/소재지	종류	면세점	영업시작	면적(㎡)
대구 A점	아울렛	○	2010. 7.	35,476.93

1) 구 지방세법상 '사업소세 종업원할'은 지방세법의 개정(2010. 1. 1. 법률 제9924호)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방세법의 개정(2014. 1. 1. 법률 제12153호)으로 현재 그 명칭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편의상 귀속연도에 관계 없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대구 동구 B	마트			58,741.44
	시네마	○		5,942.36
C점 광주 동구 D	백화점		1998. 9. 11.	75,198.33
	시네마	○	2000. 7. 1.	5,163.12
광주 E점 광주 광산구 F	아울렛	○	2009. 9. 24.	56,299.22
	마트			60,507.39
	시네마	○	2012. 2. 24.	7,477.48
광주 G점 광주 서구 H	아울렛	○	2006. 11. 23.	30,847.05
	마트		2008. 10. 24.	33,018.48

나. 대구광역시는 2014. 4. 29., 광주광역시는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각 지점 내 아울렛 또는 백화점, 마트, 시네마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울렛과 시네마 사업장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라 하더라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의하여 별지1 내지 4 기재와 같이 각 지방세법 종업원분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처분'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연번	처분청	처분일자	지점	총 부과세액 (가산세포함)	연도	관련 별지
1	대구 동구청	2014. 7. 10.	대구 A점 (아울렛, 시네마)	43,082,630원	2011-2013년도	1
2	광주 동구청	2013. 5. 14.	C점(시네마)	16,678,040원	2008-2012년도	2
3	광주 광산구청	2013. 5. 10.	광주 E점 (아울렛, 시네마)	38,120,010원	2009-2012년도	3
4	광주 서구청	2013. 5. 20.	광주 G점 (아울렛)	54,362,650원	2008-2012년도	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다. 원고는 2013. 8. 6. 이 사건 제2 내지 4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19.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의 송달일인 2014. 6. 25.로부터 90일 이내인 2014.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때까지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백화점 또는 아울렛, 마트, 시네마는 비록 같은 건물 내에 있으나 사용하는 공간이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사업장 별로 직원을 달리 선발(채용사이트 및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름)·배치하여 사업장 사이의 인적 교류가 없는 등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별개의 사업소로 평가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지점마다 하나의 사업소만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대구 A점의 아울렛·시네마, C점의 시네마, 광주 E점의 아울렛·시네마, 광주 G점의 아울렛은 그 사업소의 종업원 월 통상인원이 50명 이하이므로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5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1) 원고의 목적사업

원고는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문화사업', '유통전문 판매업', '슈퍼체인사업', '영화상영업,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및 부속되는 사업 일체'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원고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의류, 피혁류, 완구류(완농품제외), 식품류(제과업) 및 기타 각종 일용품의 제조, 가공 및 도산매에 관한 사업	
3. 각종 오락장, 식음료판매장, 체육시설, 공연장, 주차장 및 기타 서비스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관광알선, 광광도서의 출판과 판매, 토산품 판매, 사진업, 환전업에 관한 사업	
5. 실내장식과 광고물 제작에 관한 사업	
6. 부동산의 신축판매, 매매, 판매알선 및 임대에 관한 사업	
7. 수출입업에 관한 사업	8. 신용카드업
9. 문화사업	10. 의료기구 및 위생용품 판매사업
11. 용역제공에 관한 사업	12. 식품 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3. 식품 가공업 및 판매업	14. 농, 수, 축산물 판매업
15. 식품소분 판매업	16. 화공약품제조 및 판매업
17. 다류제조 및 판매업	18. 유통전문 판매업
19.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20. 조미식품 제조 및 판매업
21.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	22. 기타 식품 판매업
23. 골판지 제조 및 가공 판매업	24.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가공 판매업
25. 지류 제조 및 가공 판매업	26.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운영
27. 유기장업	28. 관광사업
29. 영화상영업,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및 부속되는 사업 일체	
30. 여행업	31. 원격평생교육시설운영
32. 슈퍼체인사업	33. 주류중개업
34.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운영	35. 신재생에너지발전업
36. 태양광발전업	37. 석유판매업과 연료소매업
38. 주유소 및 가스충전업	39. 통신판매업
40. 전자상거래업	41. 무점포소매업
42. 식품의 수집, 저장, 보존, 배송, 포장업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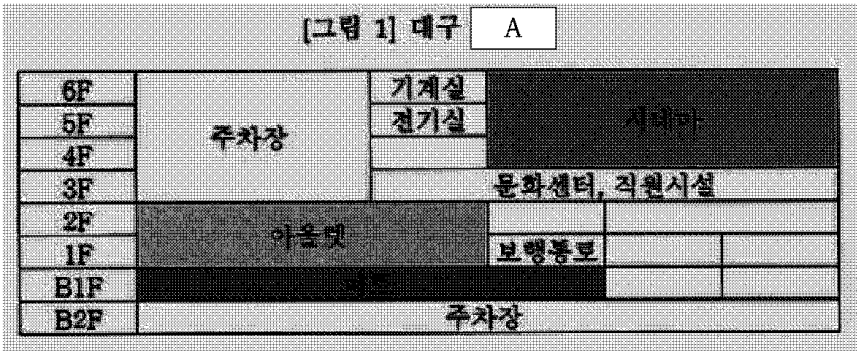
43. 창고업	44. 위 사항에 부수되는 사업 일체

2) 이 사건 각 지점별 건물 사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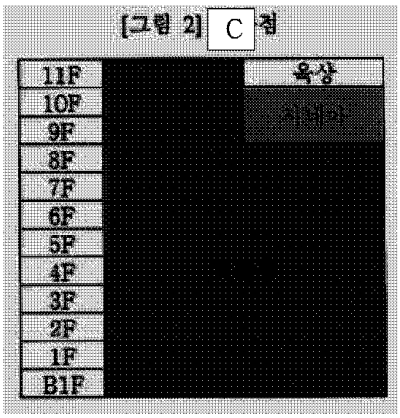
가) 일반 현황

① 대구 A점 : 마트가 지하 1층을, 아울렛이 지상 1, 2층을, 시네마가 지상 4층~6층을 각 사용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지하 2층 및 지상 3층~6층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1] 대구 A



[그림 2] C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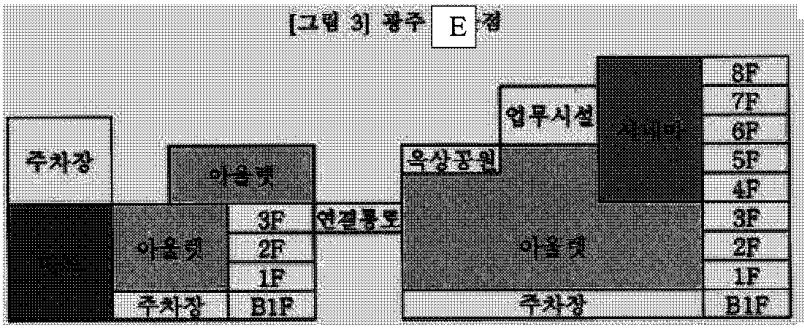


② C점 : 백화점이 지하 1층~지상 8층 전체 및 지상 9층~11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고, 시네마가 지상 9, 10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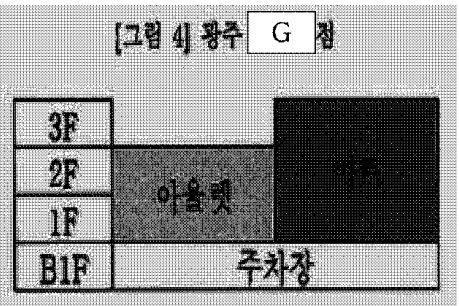
③ 광주 E점 : 광주 E점은 두 개의 건물이 연결된 형태로, 아울렛은 양쪽 건물의 지상 1층~5층을 사용하고 있고, 마트는 한 건물의 지하 1층~3층을, 시네마는 마트와 다른 건물의 지상 4층~8층을 사용하고 있다. 주차장은 양 건물의 지하 1층 및 마트가 있는 건물의 지상 4층~6층에 위치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그림 3] 광주 E점



[그림 4] 광주 G점



④ 광주 G점 : 전체 3층 건물 중 1, 2층에는 층마다 마트와 아울렛 매장이 있고, 3층은 마트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⑤ 한편, 이 사건 각 지점은 한 건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두 동의 건물로 구성(광주 E점)되어 있더라도 연결통로가 있어 실내에서 이동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의 구역을 반영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 또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

나) 공용공간의 존재 및 사용

① 이 사건 각 사업장의 모든 고객과 종업원은 별도의 출입통제절차 없이 전체 층의 화장실 등 공중편익시설, 판매장, 지하 및 외부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② 대구 A점의 마트와 아울렛은 지상 1층 검품장 및 검품장 내 오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지상 3층의 직원식당 및 지하 1층의 의료실은 마트에서 설치·운영하는 것이지만 아울렛 및 시네마의 직원들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으며, 기타 직원 휴게실, 탈의실 등의 공용공간이 있다.

③ C점은 인접한 학교법인 I 소유의 '광주 동구 J 등 토지 및 그 지상의 주차장용 건물(4층)을 원고 명의로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백화점, 시네마를 불문하고 C점의 고객이라면 위 주차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2] 또한 C점에는 직원식당,

2) 원고는 C점의 I 주차장에 대하여, C점의 백화점 사업장이 자신의 고객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임차한 것으로 백화점 영업시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휴게실, 의무실 등의 공용시설이 있고, C점 각 사업장의 직원들이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라) 공동관리

① 대구 A점의 안전·주차·카트·미화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주식회사 세루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먼저 마트에서 주식회사 세루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추후 사업장들 사이에서 '대구 A점 복합 건물 관리 매뉴얼'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전용 연면적,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② C점의 시설관리 및 주차 업무위탁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롯데쇼핑 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엠에스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백화점·시네마 사이의 운영·관리비 배분은 원고 내부의 '영화관 투자비 및 공통비용 배분 기준(안)에 따라 용역비용을 내부적으로 정산한다.

③ 광주 E점 마트 사업장의 안전·주차·카드·미화 업무위탁에 관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 E점' 명의로 동광개발 주식회사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하 '통합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어 있고, 이에 부수하여 광주 E점의 아울렛 사업장의 안전 등 업무위탁에 관하여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 E점' 명의로 '롯데마트 E점 도급업무 위탁 부속계약'이 체결되어 있다. 동광개발 주식회사는 마트·아울렛·시네마에 대한 안전 등 도급용역비를 모두 마트에 청구하고, 우선 마트에서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한 후 이후 다른 사업장과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④ 광주 G점의 안전·미화·주차·카트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동광개발

이후에는 주차장을 폐쇄하여 시네마의 고객이 I 주차장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백화점과 영화관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 백화점과 영화관의 고객을 배타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백화점 영업시간보다 빠르거나 늦은 시간에 C점의 시네마를 이용하는 고객이 I 주차장을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 I 주차장에서 시네마의 고객을 확인하여 주차를 금한다는 내용은 아니며, C점으로서는 백화점 고객과 시네마고객을 구분하지 않고 본래 건물의 주차장이 만차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I 주차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일괄하여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마트에서 동광개발 주식회사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마트·시네마·백화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따라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한편 광주 G점의 각 사업장 시설·유지보수 용역에 관하여, 마트는 주식회사 휴:콥과, 아울렛 및 시네마는 아울렛이 일괄하여 성원개발주식회사와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마트, 아울렛이 각 시설·유지보수 용역대금을 부담하고, 이후 시네마가 아울렛에 관련 비용을 정산한다.

3)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수도 및 전기요금 납부 현황

이 사건 각 지점 중 대구 A점과 광주 G점의 수도요금은 원고 명의로, 전기요금은 마트 명의로 일괄 징수되고 있다.

4) 인적 설비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고 본인이고, 원고 법인의 신규직원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후 해당 사업부문에 배치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7, 42 내지 44, 46, 60 내지 74호증, 을가 제4, 5, 6, 8, 9, 10호증, 을나 1, 4, 8 내지 12호증, 14 내지 18호증, 을다 제1 내지 10호증, 을라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하고,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지점의 사업장은 인적 설비 및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분이 독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지점별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별개의 사업소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당초 사업소세는 사업장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977년에 시·군세로 신설된 목적세로, 일정 지역 내에 위치한 사업소에 대해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할과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종업원할로 구성되어 있다가, 2010. 1. 1.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었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인프라에 대한 간접적인 편익과세 또는 업무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광역시의 경우 해당 자치구 내에 위치한 사업소가 매달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세의무자로 삼되,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되는데, 이와 같이 면세점을 두는 주된 목적은 과세표준이 소규모인 경우 과세의 실효성이 낮고, 영세한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② 이 사건 각 지점에 있는 아울렛 또는 백화점, 마트, 시네마는 모두 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장소적 인접성이 인정되고, 각 사업장의 고객이 혼재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각 사업장의 고객과 종업원이 이용하는 화장실 등 공공편익시설, 직원 휴게실, 직원 식당, 주차장 등 공용 장소 및 설비의 이용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업무상 점유·사용하는 장소가 층별 또는 구역별로 구분되어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각 사업장의 구역을 반영구적으로 구분하는 시설 또는 출입문이 존재하지 않아 자유롭게 이동하며 각종 설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 사이에 물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같은 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백화점 또는 마트와 시네마의 사업장이 서로 다른 층에 있는 백화점 또는 마트 사업장의 판매장에 비하여 장소적 인접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 법인은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를 공시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안전·청소 등 용역계약, 전기·수도요금 등을 마트 사업장 또는 원고 법인 명의로 일괄 계약 및 납부하고 있고(원고는 이러한 건물 관리 비용 등을 이후 각 사업장별로 배분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법인의 본사 차원에서 사업부 별로 진행하는 내부적 정산 과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설비가 독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이 사건 각 지점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④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종업원이 체결한 모든 근로계약의 상대방은 원고 법인으로, 원고는 신규 직원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뒤 일괄적으로 각 사업장에 배치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이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정보 웹사이트나 서로 다른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인적 설비의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원고 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의 대부분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이 사건 각 지점과 같이 집합적으로 동일 공간에서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복합쇼핑몰과 같은 서비스 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은 지점별로 공동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 19.

재판장 판사 백정현

판사 임성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판사 이아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별지1

피고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의 2014. 7. 10.자 부과처분

귀속연월	고지세액(가산세 포함, 단위 원)
2011년 1월	2,799,230
2011년 2월	1,321,390
2011년 3월	933,370
2011년 4월	1,249,760
2011년 5월	816,670
2011년 6월	1,188,060
2011년 7월	928,770
2011년 8월	1,408,120
2011년 9월	1,611,850
2011년 10월	1,180,350
2011년 11월	977,100
2011년 12월	1,419,270
2011년 12월[3)]	477,980
2011년 합계	**16,311,920**
2012년 1월	2,359,130
2012년 2월	1,213,680
2012년 3월	804,330
2012년 4월	1,027,530
2012년 5월	960,270
2012년 6월	1,487,160
2012년 7월	1,098,820
2012년 8월	1,060,890
2012년 9월	1,383,280
2012년 10월	944,830
2012년 11월	1,450,100
2012년 12월	1,002,840
2012년 합계	**14,792,860**
2013년 1월	1,702,8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2013년 2월	1,087,710
2013년 3월	822,140
2013년 4월	885,440
2013년 5월	839,310
2013년 6월	857,990
2013년 7월	900,920
2013년 8월	1,239,740
2013년 9월	1,125,950
2013년 10월	812,950
2013년 11월	827,820
2013년 12월	875,030
2013년 합계	**11,977,850**
총 합계	**43,082,630**

3) 2011년 12월분이 2회에 걸쳐 고지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별지2

피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의 2013. 5. 14.자 부과처분

귀속연월	본세	가산세	합계
2008년 6월	235,970	172,410	408,380
2008년 7월	191,470	138,060	329,530
2008년 8월	232,640	165,650	398,290
2008년 9월	254,140	178,670	432,810
2008년 10월	208,560	144,690	353,250
2008년 11월	158,370	108,440	266,810
2008년 12월	225,000	151,850	376,850
2008년 합계	**1,506,150**	**1,059,770**	**2,565,920**
2009년 1월	285,400	190,130	475,530
2009년 2월	217,360	142,970	360,330
2009년 3월	180,770	117,220	297,990
2009년 4월	189,430	121,070	310,500
2009년 5월	155,070	97,720	252,790
2009년 6월	201,870	125,390	327,260
2009년 7월	188,000	115,030	303,030
2009년 8월	217,510	131,070	348,580
2009년 9월	206,240	122,290	328,530
2009년 10월	191,220	111,720	302,940
2009년 11월	161,430	92,860	254,290
2009년 12월	231,130	130,740	361,870
2009년 합계	**2,425,430**	**1,498,210**	**3,923,640**
2010년 1월	284,450	158,350	442,800
2010년 2월	0	0	0
2010년 3월	270,600	148,370	418,970
2010년 3월[4]	150,910	81,240	232,150
2010년 4월	178,840	94,770	273,610
2010년 5월	162,250	84,480	246,730
2010년 6월	193,970	99,130	293,100
2010년 7월	169,300	85,050	254,350
2010년 7월[5]	177,070	88,950	266,020
2010년 8월	225,310	111,090	336,400
2010년 9월	220,160	106,510	326,670
2010년 10월	179,830	85,370	265,2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2010년 11월	137,850	64,210	202,060
2010년 12월	225,410	102,890	328,300
2010년 합계	**2,575,950**	**1,310,410**	**3,886,360**
2011년 1월	347,660	155,470	503,130
2011년 2월	193,570	84,930	278,500
2011년 3월	152,660	65,520	218,180
2011년 4월	193,010	81,100	274,110
2011년 5월	152,040	62,510	214,550
2011년 6월	196,420	78,930	275,350
2011년 7월	0	0	0
2011년 8월	214,790	82,120	296,910
2011년 9월	219,870	82,350	302,220
2011년 10월	189,310	69,150	258,460
2011년 11월	143,400	51,000	194,400
2011년 12월	221,060	76,700	297,760
2011년 합계	**2,223,790**	**889,780**	**3,113,570**
2012년 1월	377,390	127,430	504,820
2012년 2월	167,780	55,090	222,870
2012년 3월	122,980	39,310	162,290
2012년 4월	163,170	50,690	213,860
2012년 5월	163,710	49,290	213,000
2012년 6월	225,460	65,920	291,380
2012년 7월	199,210	56,390	255,600
2012년 8월	232,980	63,780	296,760
2012년 9월	215,440	57,040	272,480
2012년 10월	210,560	53,670	264,230
2012년 11월	162,200	39,980	202,180
2012년 12월	233,660	55,420	289,080
2012년 합계	**2,474,540**	**714,010**	**3,188,550**
총 합계	**11,205,860**	**5,472,180**	**16,678,040**

4) 2010년 3월분이 2회에 걸쳐 고지되었다.
5) 2010년 7월분이 2회에 걸쳐 고지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별지3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의 2013. 5. 10.자 부과처분

귀속연도	본세	가산세	합계
2009	2,242,910	1,295,460	3,538,370
2010	5,967,590	3,007,150	8,974,740
2011	6,989,520	2,756,460	9,745,980
2012	12,330,450	3,530,470	15,860,920
합계	27,530,470	10,589,540	38,120,01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별지4

피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의 2013. 5. 20.자 부과처분

귀속연도	본세	가산세	합계
2008	2,877,980	1,969,840	4,847,820
2009	8,633,000	5,314,450	13,947,450
2010	8,814,470	4,480,720	13,295,190
2011	8,455,500	3,231,360	11,686,860
2012	8,186,790	2,398,540	10,585,330
합계	36,967,740	17,394,910	54,362,65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별지5

관 계 법 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절 사업소세

제243조(정의) 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2. "재산할"이라 함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4. "사업소 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 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6조(납세지) 사업소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247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제249조(면세점) ①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할을, 당해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재산할을 각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점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5-16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7.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8.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④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3절 종업원분

제99조(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100조(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면세점) ①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점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